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봉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497 발의연월일: 2022. 9. 23.

발 의 자:전봉민·김도읍·김희곤

백종헌 · 서병수 · 안병길

이주환 · 이헌승 · 정동만

조경태 • 황보승희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하도록 하고, 화재감지기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금, 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시설 점검과 정비를 위해서는 정지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이 같은 예외 규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의 점검을 위해 폐쇄·차단 등을 하는 때에 화재가 발생하여 미처 대처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시설의 점검·정비를 위하여 폐쇄·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4항 신

설).

법률 제 호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8522호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 시설의 점검·정비를 위하여 폐쇄·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8522호 화재예방, 소방시	법률 제18522호 화재예방, 소방시
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	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
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	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
제12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	제12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
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) ① ~	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
	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
	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
	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
	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
	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
	<u>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</u>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⑤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	<u>⑥</u>
소방서장은 <u>제4항</u> 에 따른 작동	<u>제5항</u>
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	
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
<u>⑥</u> (생 략)	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